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허창원 의원 등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 (안 제2조)
-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안 제5조~제6조)
- 서예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안 제7조)
-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안 제8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서예진흥과 교육을 위한 것으로
-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 서예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제3조)와
 -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안 제5조~제6조) 및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안 제8조)에 대해 규정을 하였음.
- 현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이며 앞으로 서예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서예는 디지털문자영상시대 도래와 더불어 공교육에서 서예를 방치한 결과 작품수준의 저하는 물론 서예인구의 고령화, 학교 현장에서의 서예교육 부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영화음악,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인쇄 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끝.